

# 인천지방법원

## 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511998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1. 8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이상규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23.02.07. 압류			배당요구종기	2025. 11. 24.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입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증금	차입	전입신고일자·외국인등록(체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주택도시보증공사 (임차인:허용)	전부	권리신고	주거 임차인	2022.05.20.~2024.09.09.	220,000,000		2022.05.20.	2022.03.25.	2025.11.12.	
허용	전부	등기사항 전부증명서	주거 임차권자	2022.05.20.	220,000,000		2022.05.20.	2022.03.25.		
표은수		현황조사	주거 임차인				2025.01.31.			
<b>&lt;비고&gt;</b> 주택도시보증공사(임차인:허용) : 임차인 허용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으로서,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약약을 제출함 허용 : 주택임차권등기권리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4.1.18.임										
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
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을구 순위 3번 주택임차권등기(다만,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약약서가 제출 됨)										
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										
비고란										

- 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  
 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# 부동산의 표시

2025타경511998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9-3  
이레인  
[도로명주소]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48

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13층 업무시설

지1층 243.98㎡

1층 55.08㎡

2층 295.15㎡

3층 295.15㎡

4층 295.15㎡

5층 295.15㎡

6층 295.15㎡

7층 295.15㎡

8층 295.15㎡

9층 295.15㎡

10층 295.15㎡

11층 295.15㎡

12층 295.15㎡

13층 295.15㎡

옥탑2층 24.01㎡

옥탑1층 13.23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2층201호

철근콘크리트구조 59.8677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9-3  
대 452.9㎡
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. 452.9분의 9.4477

감정평가액

198,000,000

회차

기 일

최저매각가격

매수신청보증금

1회

2026.02.04

198,000,000

19,800,000

2회

2026.03.19

138,600,000

13,860,000

3회

2026.04.20

97,020,000

9,702,000

4회

2026.05.22

67,914,000

6,791,400